

[] 고용보험

[] 산재보험

휴업 등 신고서

[] 예술인

[] 노무제공자

※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일
------	-----	------	----

사 업 장	사업장관리번호 - - -			
	이용개시번호			
	명칭			
	소재지			
	전화번호	팩스번호	전자우편주소	휴대전화번호

성 명	주민등록번호	휴업 등		휴업 등 사유
		시작일	종료일	
	-			[] 휴업(사업장 사정) [] 휴업(부상·질병·육아 등 종사자 사정) [] 유산·사산 [] 출산전후 [] 기타()
	-			[] 휴업(사업장 사정) [] 휴업(부상·질병·육아 등 종사자 사정) [] 유산·사산 [] 출산전후 [] 기타()
	-			[] 휴업(사업장 사정) [] 휴업(부상·질병·육아 등 종사자 사정) [] 유산·사산 [] 출산전후 [] 기타()
	-			[] 휴업(사업장 사정) [] 휴업(부상·질병·육아 등 종사자 사정) [] 유산·사산 [] 출산전후 [] 기타()
	-			[] 휴업(사업장 사정) [] 휴업(부상·질병·육아 등 종사자 사정) [] 유산·사산 [] 출산전후 [] 기타()
	-			[] 휴업(사업장 사정) [] 휴업(부상·질병·육아 등 종사자 사정) [] 유산·사산 [] 출산전후 [] 기타()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10제5항, 제48조의6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7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9제4항, 제42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업 등을 했음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사용자·대표자)
[] 보험사무대행기관

(서명 또는 인)
(서명 또는 인)
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·센터)장 귀하

유의사항

1. 이 신고서는 노무제공자 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예술인이 부상·질병, 출산 또는 유산·사산, 육아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업주가 작성하여 신고합니다.
※ 종사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노무 미제공 사유와 소득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합니다.
2. 출산 또는 유산·사산을 사유로 노무제공이 불가한 경우 휴업 기간은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04조의9제2항 및 제104조의15 제2항에 따른 지급기간으로 제한됩니다.
3. 휴업 등 기간 동안의 보수액에 대해서는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, 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산입하여 부과됩니다.
4.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작성방법

1. 사업장란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등 관련 내역을 빠짐 없이 작성합니다.
2. 이용개시번호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경우에만 이용 사업장의 이용개시번호를 적습니다.
3. 휴업 등 사유란의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하며,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에 √ 표시를 하고 해당 사유를 적습니다.